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65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승원 · 한병도 · 강준현
민병덕 · 문대림 · 이광희
이건태 · 전용기 · 김용민
박선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 직무대리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2조의 직무대리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u>
2. ~ 16. (생략)	2. ~ 16. (현행과 같음)